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1.06.23.
개정	2021.12.24.
개정	2022.05.24.
전부개정	2024.0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운영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학교체육위원회
5. 여성체육위원회
6. 스포츠교류위원회
7.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8. 경기력향상위원회
9.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
10. 해양스포츠위원회
11. 의무위원회

12. 기타 체육회 정관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외에 다른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해당 위원회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 하되 위원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의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경기력향상위원회에 한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경비의 지급) 체육회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각종위원회의 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부의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무 국외 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생활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각종 생활체육사업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수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학교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운동부 창단에 관한 사항
2.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교 정책 종목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기지도자 지원 심의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여성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여성체육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스포츠교류위원회) 스포츠교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교류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국제친선교류사업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포츠교류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경기력향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

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적 경기력향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선수강화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강화훈련 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기력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실업팀 창단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6. 우수선수 확보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7. 경기력향상육성비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8. 실업팀(시직장운동경기부, 체육회) 운영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9. 실업팀(시직장운동경기부, 체육회) 선수단 구성(임용, 재임용, 해임 등) 심의에 관한 사항
10. 과학적 훈련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발전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체육 분야의 새로운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해양스포츠위원회) 해양스포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스포츠 저변확대 방안 마련 및 R&D 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양스포츠 및 관광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스포츠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무위원회) 의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

한다.

1. 스포츠 의학 분야의 현장지원에 관한 업무
2. 스포츠의학 강습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지원
3. 그 밖에 의무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2021.06.23.)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4.)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5.24.)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 날까지로 한다.

부 칙(2024.0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